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89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유상범・김소희・김기현

김승수 · 고동진 · 이인선

김정재 · 송석준 · 조배숙

서범수 · 김위상 · 곽규택

서지영 · 김성원 · 장동혁

조정훈 • 나경원 • 정점식

박형수 · 권영진 의원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농·어업, 조선업 등 인력난이 심화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경제 및 산 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외국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음. 따라서 외국인력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필요 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 되는 시점임.

이와 관련, 법무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유입의 효과, 산업계 중장기 인력 부족 규모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조기 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이 지역·산업 발전, 생산·소비 진작 등 외국인 유입의 긍정적 효과와 체류관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농어민,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력을 적절하게 도입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과학적인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사증 발급 규모 산정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관계 전문가 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 의2 신설).

법률 제 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연간 사증 발급 규모의 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체류관리, 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의 규모(이하 "연간 사증 발급 규모"라 한다)를 체류자격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및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증 발급 규모의 산정·관리 및 사증 발급 요건 설정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8조의2(연간 사증 발급 규모의 |
| | 고시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경 |
| | 제적 부가가치 창출, 체류관리, |
| | 사회통합 등의 측면에서 외국 |
| | 인 유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
| |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하다 |
| |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
| | 에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의 규 |
| | 모(이하 "연간 사증 발급 규 |
| | 모"라 한다)를 체류자격별로 |
| |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②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유입 |
| | 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및 |
| | 연간 사증 발급 규모 산정 등 |
| | 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
| |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 |
| | 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
| |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 |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
| |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
| |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 |

- 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증 발급 규모의 산정· 관리 및 사증 발급 요건 설정 등에 관한 검토·조사 및 연구 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 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